

일상감사 의견서

사 업 명	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탈취설비 제조·구매·설치		
사업유형	계약(물품)		
집행부서	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	관리번호	2019-562

사업개요

- 사 업 비 : 364백만 원(시설비)
- 사업기간 : 계약 후 2020. 6. 30. 까지
- 계약방법 : 1인견적 수의계약
- 계약상대자 : 청우에이스㈜
- 사업내용 : 탈취설비 제조·구매·설치

명 칭	규 격	수 량	비 고
탈취기(1M-21-29)	플라즈마탈취기,120m³/min, 약950Wx2 220V x 60Hz	1식	1처리장
탈취팬(1M-21-30)	내식성터보팬,120m³/minx150mmAq, 약5.5kW 220V x 60Hz	2대	
탈취기(2M-12-26)	플라즈마탈취기,10m³/min, 약700Wx1 220V x 60Hz	1식	2처리장
탈취팬(2M-12-27)	내식성터보팬,10m³/minx150mmAq, 약1.5kW 220V x 60Hz	2대	

감사결과

I. 관련절차

-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: **비대상**(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)
- ②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: **비대상**(조달구매)
-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: **비대상**(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)
- ④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: **비대상**(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아님)
- ⑤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 : **이행 예정**
-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: **해당 없음**
 - 학연, 지연, 직연,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

II. 입찰참가자격

⑦ 수의계약 대상자의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: **적정**

- 「지방계약법」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·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

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관계 기관(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)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함.

- 본 사업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인 탈취기에 대한 제조관련 사업자등록(등록번호 : 109-81-24889)을 하고 있으므로 적정함

III. 낙찰자 결정방법

⑧ 1인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: **적정**

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.
- 계약상대자[청우에이스㈜]는 탈취기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(제2018-0017-00081호), 성능인증(인증번호: 울산-20180292-0-11, 인증 유효기간 2017. 12. 20. ~ 2020. 12. 19.)을 갖추고 있음
- 따라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탈취설비 제조·구매·설치를 하고자 계약상대자와 위 규정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함

IV. 계약조건

⑨ 규격서, 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: **적정**

- 「지방계약법」 제6조(계약의 원칙) 및 ‘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 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’(재무과-41669, 2014. 9. 16.), 계약분야 ‘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’(재무과-10243, 2015. 2. 24.)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, 특이사항 없음.

감사의견

1. 관련 절차 이행

-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